

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 선고 2015나8296 판결 [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 선고 2015나8296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15. 8. 21 선고 2014가단6421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항소인망 A의 소송수계인 B

피고, 피항소인C종회

변론종결 2016. 7. 6.

판결 선고 2016. 9. 21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. 8. 21. 선고 2014가단6421 판결

주문

1.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(선정당사자)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총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원고'라 한다) 및 선정자들에게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649274/198347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내지 7 부동산 중 147054/1388429 지분에 관하여, 각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2004. 2. 25.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649274/198347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내지 7 부동산 중 147054/1388429 지분에 관하여, 각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2014. 2. 26.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'주위적 · 예비적 청구'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198,347m²(이하 '분할 전 E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69. 1. 16. F, G, H, I 앞으로 1965. 5. 30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(공유자 지분 각 1/4), 이후 분할 전 E 토지 중 공유자 지분 51293/198347에 관하여 1979. 11. 13. 창원종합위락시설건설추진회 앞으로 1979. 11. 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분할 전 E 토지는 1988. 12. 13. 창원시 의창구 J(이하 'J'이라고만 한다) E 임야 175,467m²와 K 임야 22,880m²로 분할되었고, 위 K 임야 22,880m²는 같은 날 L 임야 22,880m²로 등록전환됨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내지 7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.

다. E 임야 175,467m² 중 G 지분 전부(367635/1983470 지분)에 관하여 2004. 7. 5. 피고 앞으로 2003.11.15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, E 임야 175,467m² 중 F 지분 전부(367635/1983470 지분)에 관하여 2005. 9. 20. 피고 앞으로 2003. 11. 15.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이후, E 임야 175,467m²는 2006. 5. 2. 별지 부동산 목록

순번 1,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12 내지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M은 분할 전 E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고, 망 A, O, P, Q, R, S, F(이하 망 A와 위 6인을 통틀어 '종원 7인'이라 한다)가 위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, 그 후 피고에 위 토지 중 상부에 해당하는 1/2지분을 매도하였다. 그 후 종원 7인은 1969년 1월경 F, G에게 위 토지 중 자신들의 공유지분을 각 1/28씩 명의신탁하였고, 피고는 그 무렵 H, I에게 위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을 각 1/4지분씩 명의신탁하여 위 토지 전부에 관하여 1969. 1. 16. F, G, H, I 앞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 따라서 위 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하부의 토지는 여전히 종원 7인의 소유이고, 피고는 이후 명의신탁 해지 등을 통하여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 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, 2004. 2. 25. 문중회칙을 개정하여 종원 7인에게 분할 전 E 토지 중 상부가 아닌 나머지 하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1/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,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649274/198347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내지 7 부동산 중 147054/1388429 지분에 관하여, 각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2004. 2. 25.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대체로 이를 믿기 어렵고¹⁾,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종원 7인이 M으로부터 분할 전 E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사실 또는 피고가 망 A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양도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망 A는 1994. 2. 25.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함을 통지하고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,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.2.26.2)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, 원고 및 선정자들이 망 A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2649274/198347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 내지 7 부동산 중 147054/1388429 지분에 관하여, 각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2014. 2. 26.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A가 위 각 부동산을 1994. 2. 25.부터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).

4. 결론

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·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조종래

판사홍수진

판사박창우

별지

1)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1994년 이후 망 A의 취임기간 중 발생한 피고 종종회칙 및 회의록은 모두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, 1994. 2. 25. 회의록 중 한글로 쓰여진 '추인'부분은 A의 목도장 날인 후에 적혀져 있고 글씨체 등으로 보아 새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(갑 제5호증 참조), 2006. 2. 19. 회의록의 경우 같은 날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인데 참석한 자가 다르거나 발언한 자가 참석자 명단에서 빠져 있는 등(갑 제6, 7, 47호증 참조) 그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.

2) 2014. 2. 24.이 완성일로 보이나 후술하는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한다.

3) 가사 점유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하더라도 망 A가 1994. 2. 25.부터 2010년 2월경까지 피고의

대표자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인다.